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지도교수 신 한 원

2016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 제 관 세 학 과

성 지 현

本 論文을 成知炫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안기명　(印)

委　員　신영란　(印)

委　員　신한원　(印)

2016年 6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dCollection @ kmou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 범위 ····· 3

2. 연구 방법 ····· 4

제 2 장 보세구역과 보세사제도 ····· 5

제1절 보세구역 ····· 5

1. 보세구역의 의의 ····· 5

2. 보세구역의 종류 ····· 7

3. 우리나라 보세구역 운영현황 ····· 10

제2절 자율관리보세구역 ····· 11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도입배경 ····· 11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연혁 ····· 13

3.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주요내용과 운영현황 ····· 17

제3절 보세사제도 ····· 24

1. 보세사제도의 도입배경 ····· 24

2. 보세사 자격 개요 ····· 26

3. 보세사의 역할과 의무 ····· 29

제 3 장 보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2

제1절 보세사제도의 현황분석 ····· 32

1. 보세사제도의 일반현황 ····· 32

2. 보세사제도의 운영현황 ····· 33

제2절 보세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 35

1. 설문조사 목적과 구성 ····· 35

Collection @ kmou

2. 응답자의 특성 ····· 36
3. 분석결과 ····· 37
제3절 보세사제도의 문제점 ····· 43
1. 보세사의 종속성 문제 ····· 43
2. 보세사 전형의 변별력 부족 ····· 45
3.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 방안 부재 ····· 46
4. 보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 문제 ····· 48

제 4 장 보세사제도의 개선방안 ····· 50
제1절 보세사 자격의 질적 향상 ····· 50
제2절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52
1.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의 의무화 추진 ····· 53
2. 보세사 등급제도 도입을 통한 변별력 확보 ····· 54
제3절 보세사 자격의 사회적 위상 제고 ····· 55
1. 보세사의 직무 권한 확대를 통한 세관행정 적극 활용 ····· 55
2. 보세사 협회 결성 및 법규일원화 추진 ····· 58
제4절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계기 제공 ····· 60
1. 보세사 영리법인 설립·운영 ····· 60
2. 보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61

제 5 장 결론 ····· 6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6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67

참고문헌 ····· 68

<부록> 설문지 ····· 69

Collection @ kmou

< 표 목차 >

<표 2-1> 보세구역의 설치목적별 구분 ····· 8
<표 2-2> 보세구역의 종류 ····· 9
<표 2-3> 본부세관별 보세구역 현황 ····· 10
<표 2-4> 우리나라 무역규모 변화 추이 ····· 12
<표 2-5> 보세구역 수·무역규모·세관인력 변화 추이 ····· 12
<표 2-6> 보세화물 관리제도 변천 ····· 13
<표 2-7>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법령 ····· 14
<표 2-8>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현황 ····· 18
<표 2-9> 자율 및 非자율관리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 18
<표 2-10> 보세구역 유형별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 19
<표 2-11>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관련 규정 ····· 23
<표 2-12> 보세사 자격요건 변천 ····· 25
<표 2-13> 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 28
<표 3-1> 응시현황 및 합격률 ····· 32
<표 3-2> 보세사 자격 및 등록 현황 ····· 33
<표 3-3> 보세사 근무현황 ····· 34
<표 3-4> 보세구역별 보세사 등록 현황 ····· 35
<표 3-5>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요구사항 ····· 37
<표 3-6> 보세사제도의 개선 요구사항 ····· 38
<표 3-7> 보세사제도의 지위향상 방안 ····· 39
<표 3-8> 보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 39
<표 3-9> 보세사 위법행위 언론보도 내역 ····· 44
<표 3-10>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 현황 ····· 47
<표 4-1> 관세사 1차시험 합격통계 ····· 51

Collection @ kmou

<표 4-2>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법령 ····· 55
<표 4-3> 세관직원으로부터 보세사로의 이전업무 개선방안 ····· 57
<표 4-4> 보세사 관련 규정의 최근 변화내용 ····· 59
<표 4-5> 보세사 2회 이상 경고처분자 현황 ····· 62
<표 4-6> 최근 5년간 보세사 징계 현황 ····· 62
<표 4-7> 보세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 63

Collection @ kmou

< 그림 목차 >

<그림 2-1> 보세구역제도 변천개요 ····· 6
<그림 2-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절차 개요도 ····· 20
<그림 2-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갱신절차 흐름도 ····· 21
<그림 2-4> 보세사 등록절차 ····· 28
<그림 2-5> 보세사 업무처리 흐름도(보세창고) ····· 30
<그림 3-1> 보세구역 유형별 보세사 수 ····· 36
<그림 3-2> 보세구역 근무경력 ····· 37
<그림 3-3> 자율관리보세구역 개선분야 中 보세사제도 개선 요구사항 ····· 38
<그림 3-4> 영업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만족도 ····· 40
<그림 3-5>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만족도 ····· 41
<그림 3-6> 보세사 업무의 중요성 인식도 ····· 41
<그림 3-7> 보세창고별 중요성 인식도 비교 ····· 42
<그림 3-8> 보세사의 업무상 독립성 조사 ····· 43

Collection @ kmou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Sung, Ji-Hye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Due to the liberalization and opening of global economy, trade volume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import and export logistics volume has rapidly increased. Accordingly, countries have been putting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o facilitate international logistics flow, but since the 9/11 attack in the U.S., the trend of global logistics has changed from being 'quick and smooth' to 'safe'.

In case of Korea that has adopted in bond system, customs officers were dispatched in the beginning to bonded area for strict management of in bond shipment directly by the government, but with the rapid increase in global trade volume, self-managed bonded area and bonded good caretaker systems were adopted for rapid and efficient logistics support in an indirect management method.

For safe international trading, fair business conduct by bonded goods caretakers, who handle bonded goods on behalf of customs officers, is especially important, but they are sometimes involved in smuggling that they are disrupting the order in bonded area and threatening the safety of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urse of improvement in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by examining such problems.

Collection @ kmou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study data in Korea and analyzed publications and statistical data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Korea Customs Service and Korea Customs Logistics Association. In addition,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on bonded goods caretakers that are in the actual operations.

As a result, problems including the dependenc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bonded goods caretakers and bonded area managers, level of difficulty in bonded goods caretaker screening that depreciates the qualitative value of professional license, absence of institutional strategy to reinforce and maintain the professionalism and ethics of bonded goods caretakers, and lack of social incentives at work were draw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vel of difficulty in screening needs to be heightened or the number of qualified candidates should be limited to increase the scarcity value first. Second, regular training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reinforce and maintain bonded goods caretakers' professionalism and ethics.

Therefore, legal rights of bonded goods caretakers should be expanded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should be supported to enhance their social stature. Lastly, to secure independence of bonded goods caretakers from their employers, establishing bonded goods caretakers' corporation and cancelling the qualification upon illegal acts may be options.

The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is the system that only exists in Korea. The number of bonded goods caretakers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current global trading environment. Therefore, the role of bonded goods caretakers is crucial in securing fast logistics and safe shipment management. For safe management of bonded shipments, reduced administrative power and development of logistics, continuous attention and research on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are needed.

Collection @ kmou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블록화로 인한 국제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대로 각국은 자유무역을 뒷받침하고 물류흐름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채권의 확보와 밀수 방지, 국가안보[1] 등의 이유로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보세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보세화물이 있는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관세당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무역규모의 확대와 교역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세관 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보세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 및 세관의 안보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와 보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를 채용하여 화물관리와 감시업무를 자율적으로 하고 세관의 통제·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세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고용된 피고용인 신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보세사가 현실적으로 과연 고용관계를 벗어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실제로 보세사가 보세창고 운영인(보세사의 고용주), 밀수업자와 결탁하여 밀수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무

1)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제교역에서의 안전문제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Collection @ kmou

역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세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비단 직무상 독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내 보세사 역할에 대한 경시(輕視) 혹은 보세사 자격의 사회적 지위 문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채용 당시 또는 자격취득 당시와는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세사가 본분을 망각하였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의 보세사제도가 '채용'에만 국한되어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보세사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상을 격하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성·윤리성을 제고하거나 전문성을 강화·유지할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서 시작된 보세사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고, 2010년 2월부터 보세구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사를 채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비자율관리보세구역에도 보세사가 배치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보세사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논문은 전반적인 보세구역이나 특정 보세구역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보세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일부로서 미미한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자유무역 기조에서 신속한 물류지원과 철저한 안보감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세사에 대하여 비중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특히 보세구역과 보세사를 관리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세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보세구역과 보세사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관세법상 보세사제도의 운영현황과 보세사 업무실태를 연계·

Collection @ kmou

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근무현장에서 보세화물 취급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세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보세사의 독립성을 지향하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보세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정된 세관 인력을 대신하여 보세구역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도입배경과 현황 등 전반적인 보세구역제도에 대하여 고찰하되, 주요 연구내용은 보세사라는 특정 자격 제도에 대하여 그 범위를 한정지었다.

따라서, 보세구역과 보세사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하고 보세사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동 제도가 급변하는 세계물류환경에서 실질적인 기업지원 기능과 함께 세관의 안보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논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과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 구역제도 개념, 도입배경 및 연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세구역 제도 아래 도입된 보세사제도의 취지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Collection @ kmou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우리나라 보세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업무현장의 보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현재 보세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세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와 함께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병행하였다.

보세구역 및 보세사제도의 일반적인 현황과 변천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간행물·단행본·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였고, 보세구역 및 보세사 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관세청과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발간한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자율관리보세구역에 관한 국내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세사제도의 운영실태와 현실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세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업 종사자와 수시 인터뷰(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내부 교육자료 및 국내 논문을 검토하고 관세청·세관의 수출입물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Collection @ kmou

제 2 장 보세구역 및 보세사제도

제 1 절 보세구역

1. 보세구역의 의의

보세(保稅)란 글자 그대로 보면 일정한 목적으로 관세 부과를 미루어 두는 상태를 말한다.[2] 관세법상 물품관리에 적용되는 '보세'의 개념은 관세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즉 수입신고수리[3] 미완료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을 보세화물(保稅貨物)이라 한다. 관세법상으로 보세화물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하에 보세구역(保稅區域)이라 함은 수입신고수리 미완료상태에 있는 보세화물을 세관의 관리 하에 장치·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11월 23일 제정된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그림 2-1>을 통해 우리나라 보세구역제도의 연혁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보세구역 도입 당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였고, 지정보세구역 종류를 통관역·통관비행장·통관우편국·통관장 및 세관구내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으로 하였다. 이후 1967년 특허보세구역에 보세건설장제도를 신설하여 주로 외국차관 또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플랜트공사를 보세상태로 건설할

2) 이종익, 「관세법 해설」, 협동문고, 2011.
3) 수리는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수입신고 수리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효과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이종익, 상게서, 2011.)

Collection @ kmou

수 있게 하였으며, 보세전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전시회를 보세상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제교역과 문화교류 촉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1978년 12월 개정 관세법에서는 지정보세구역을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재편하고 특허보세구역에 보세판매장을 추가하였고, 1981년에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98년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1999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에는 역할이 유사한 보세창고와 보세장치장을 통폐합하여 보세창고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정보세구역 2종, 특허보세구역 5종, 종합보세구역으로 현재의 보세구역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2-1> 보세구역제도 변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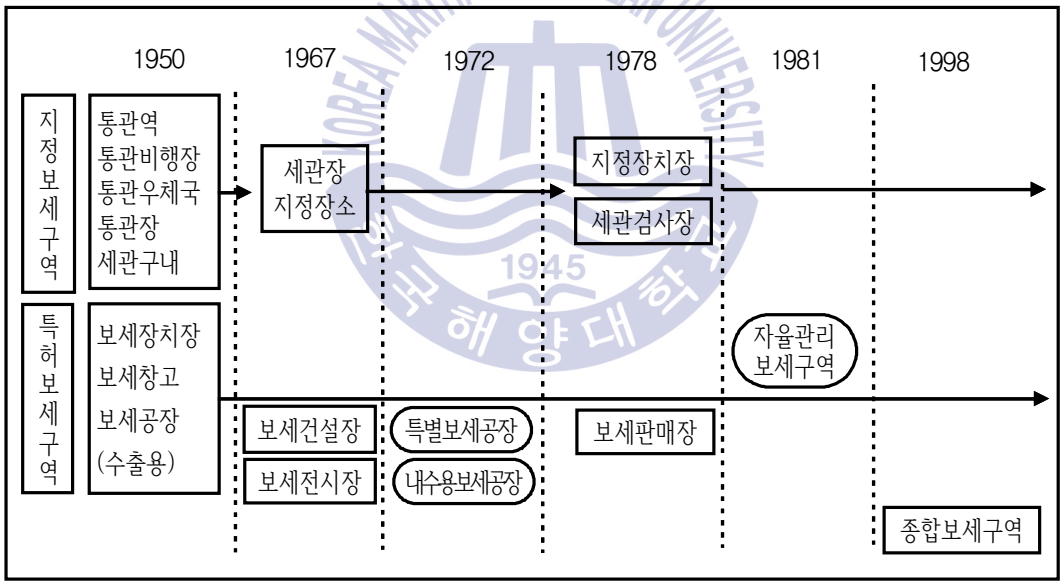

자료 :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보세화물관리」, 2015

보세구역은 세관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사실상 세관장의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를 받기 전에는 그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징수를 확보할

Collection @ kmou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세운송도 엄격한 세관의 통제를 받으며 이루어진다. 즉 보세운송업자에 의한 운송, 담보제공, 도착확인 등을 하여 국내에서의 운송 도중에 보세화물의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출이 된 경우에도 관세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징수의 확보는 보세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4)]

또한, 통관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물품과 반송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밀수출입을 방지하는 등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일정한 장소만을 지정 또는 특허함으로써 물품의 반출입 감시, 물품검사 등의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시키고,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보세구역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 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54조에 의거, 크게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보세창고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용 보세창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야적전용 보세창고·위험품전용 보세창고·액체화물전용 보세창고 등의 특수용도의 보세창고를 인정하고 있다.

보세구역을 설치 목적에 따라 <표 2-1>과 같이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통관관리 등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소극적 보세구역과 수입통관절차의 유예를 통한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게서, 2015.

Collection @ kmou

<표 2-1> 보세구역의 설치목적별 구분

목적	구분	개념	종류	설치목적
소극적	지정	•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 • 지정권자 : 세관장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 행정상 공공의 목적
적극적	특허	• 사인 토지, 건물 중 신청 • 특허권자 : 세관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건설장 • 보세전시장 • 보세판매장	• 장치, 제조, 전시, 건설 및 판매목적 • 사인의 이익추구
	종합	• 특정지역 중 지정 • 지정권자 : 관세청장	• 종합보세구역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 및 공공이익 (투자촉진 등 조화)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보세구역 구분", 2016

소극적 보세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항만시설 등에 대하여 외국물품의 일시통관 또는 검사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 2종이 이에 속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물품의 보관, 제조·가공 등의 작업, 판매, 전시, 건설 등을 목적으로 사인(私人)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5종과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속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극적 보세구역에 해당된다.

<표 2-2>는 현행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세부적인 보세구역제도의 개념,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Collection @ kmou

<표 2-2> 보세구역의 종류

종류		개념	특허기간
지정 보세 구역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세관검사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특허 보세 구역	보세창고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	10년 이내 (갱신가능)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고·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	10년 이내 (갱신가능)
	보세전시장	박람회·전시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	박람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함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	당해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함 (연장가능)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면세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구역	10년 이내 (갱신가능)
종합보세구역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2011, p.10.

Collection @ kmou

3. 우리나라 보세구역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전체 수는 2016년 3월 기준 1,415개[5]이다. 보세구역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보세창고가 1,016개(71.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보세공장(12.3%), 지정보세구역(7.9%), 보세전시장(4.2%), 보세판매장(3.5%), 보세건설장(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본부세관별[6] 보세구역 현황

(2016년 3월 기준)

구분	지정 보세구역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합계
인천본부	24	302	30	2		11	369
서울본부	12	192	47	1	58	14	324
부산본부	31	202	37		1	6	277
대구본부	16	114	22			4	156
광주본부	25	107	15	1	1	14	163
평택직할	4	99	22			1	126
합계	112	1,016	173	4	60	50	1,415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특허보세구역 중 비중이 가장 큰 보세창고의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평택 제외)의 비율이 48.6%로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인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자가용 보세창고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5)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므로 전체 수에서 종합보세구역 수는 제외.
6)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 구별

Collection @ kmou

제 2 절 자율관리보세구역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도입배경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7]

즉, 세관이 직접 관리하던 것을 보세구역 운영인 등[8] 사인(私人)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고 세관에서는 그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 또는 감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화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가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세구역에 세관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세행정당국이 보세화물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가파른 성장과 보세화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세관 인력은 한계에 봉착했고 관세당국의 직접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 2-4>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데 1990년도에는 1,349억 달러, 2000년도에는 3,327억 달러, 2010년도에는 8,916억 달러였으며, 2013년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1990년도 대비 약 8배 증가한 수치이다. 보세화물 중 관세당국의 중점적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건수와 금액을 보면 1990년도에 1,718건, 698억 달러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14,344건, 5,156억 달러로 각각 8배와 7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 수입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관세행정당국의 업무량과 직결되는

7)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항
8) 보세구역 운영인 등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및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Collection @ kmou

수입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2-4> 우리나라 무역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천건, 백만달러)

구분		1990	2000	2010	2013	2015
수 출	건수	1,802	3,606	6,238	6,887	7,439
	금액	65,016	172,268	466,384	559,632	526,757
수 입	건수	1,718	3,302	9,143	14,344	14,460
	금액	69,844	160,481	425,212	515,586	436,499
합 계	건수	3520	6,908	15,381	21,232	21,898
	금액	134,859	332,749	891,596	1,075,218	963,255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수출입무역통계", 2016

다음의 <표 2-5>는 보세구역 수·무역규모·세관인력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8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 수출입 금액은 약 24배, 보세구역 수는 약 2.3배 각각 증가하였으나 세관의 인력은 약 1.5배만 증가하는 데에 그쳐, 무역규모의 확대와 보세화물 물동량의 증가만큼 세관의 행정인력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보세구역 수·무역규모·세관인력 변화 추이

(단위 : 개, 백만달러, 명)

구분	1980	1988	1990	2013	2015
보세구역 수	853	1,210	1,273	1,963	1,931
수출입액	39,796	112,507	134,859	1,075,218	963,255
세관원수	3,235	3,692	4,044	4,778	4,860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수출입무역통계", 2016

이와 같이 국제교역량의 급증에 따른 보세화물의 증가와 이에 대응하는 수출입

Collection @ kmou

물류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 특허보세구역의 확대 운영을 비롯한 보세구역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관세행정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반해, 정부의 공무원 증원억제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업무량 증가에 비례하는 증원은 어려워져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관리방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 또한,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축소·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보세구역관리의 일정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보세구역의 운영방식에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연혁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온 때부터 수입면허를 받아 내국물품이 될 때까지, 또는 수출신고 물품이 면허되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세관의 감시·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각 단계별로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보세구역 내에서도 물품 반출입시에 반입허가, 반출입신고, 세관공무원의 입회, 출입문 시건 및 열쇠의 세관예치 등 여러 단계의 절차에서 세관장의 엄격한 직접 관리를 받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세관장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화물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 2-6>에서와 같이 세관공무원을 당해 보세구역에 파견하여 상주 근무하게 하는 특파공무원제도를 운영하였다.

<표 2-6> 보세화물 관리제도 변천

관리제도	특파공무원제도	화물순찰반제도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리방법	세관 직접관리 (1949년~1970년대 중반)	지역별 관리 (1970년대 중반~2000년)	민간 자율관리 (1990년도~현재)

자료 :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보세화물관리」, 2015.

Collection @ kmou

'보세구역에 파견한다'라고 함은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으로 가서 그 곳에서 세관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된 공무원이 보세구역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세관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이러한 특파공무원제도는 그 업무의 성격상 1개의 보세구역에 1인을 파견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여 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무역규모가 증대되고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보세구역의 수도 크게 증가한데 반해 세관의 인력 증원은 크게 못 미처 1인이 다수의 보세구역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보세화물의 철저한 관리가 힘들어지고 업계에서는 신속한 물류흐름에 지장이 초래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화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결국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보세화물에 대한 업체의 자율관리 방식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자율관리 요령을 제정하기 위한 외국의 사례연구와 자료수집 그리고 각 세관의 의견과 여론을 취합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체계인 법령에 근거를 두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세청에서는 1981년 관세법 제72조의 3을 신설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를 최초 도입하였다.[9] 다음의 <표 2-7>은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2-7>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법령(1981.12.31.)

【관세법 72조의3 (물품의 효율적관리)】

①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물품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9) '81.12.31.자 관세법 개정시 법 제72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 75조의 2(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도 함께 신설하여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규정하게 되었다. 법 시행일은 '82.1.1.이다.

Collection @ kmo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
⑤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신청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되는 절차 및 간이한 절차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시행령제75조의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증명서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평수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의3제3항에서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제2항각호의 사유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한 절차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사후에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입회
2.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3. 법 제9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신고
4.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Collection @ kmou

5.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참여
6.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물쇠의 시정 및 세관공무원에의 열쇠예치
⑦ 자율관리보세구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보세화물관리제도는 종전 세관의 직접관리 방식에서 간접관리 방식의 제도로 전환되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영역 확대, 관세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세관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지 않고, 필요시 순찰 혹은 출장 형식으로 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한 것이다.

1981년 개정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자율관리보세구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보세사”를 의미함)로 하여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하며, 여기서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관리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부족과 신설제도로 인한 업계의 부담가중 우려 등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진 않았다.[10]

이후 관세청은 수년 간 자율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체적인 안보감시차원

10) 이기희,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 경향에 따른 보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관세학회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09, p.116.

Collection @ kmou

에서 1988년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요령'을 고시하여 실질적인 간접관리 방식의 보세화물 관리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11]

그렇지만 여전히 보세사의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세사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대두되어, 업체의 추가부담 없이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보세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세관공무원 출신뿐만 아니라 일정한 보세화물 취급경력을 가진 업체의 임직원도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되었다. 즉,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도 일정교육을 이수한 후 보세사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주요내용과 운영현황

<표 2-8>은 전국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016년 3월말 기준 전체 보세구역 1,487개 중 67.3%인 1,001개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과 비교할 경우 자율관리보세구역 개수는 1988년 23개보다 약 43배 증가하였고, 전체 보세구역 대비 자율관리보세구역 비중은 1988년 19%보다 3.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은 112개 가운데 12개인 10.7%만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에 반해 특허보세구역은 1,303개 중 933개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지정비율이 71.6%로 지정보세구역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비율보다 6.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중 영업용 보세창고가 83.7%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보세공장, 자가용 보세창고 순이었다.

11)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23개가 지정되었다.

Collection @ kmou

<표 2-8>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현황(2016년 3월)

(단위 : 개, %)

구분	지정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 보세 구역	합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기타 12)	계		
보세구역	112	547	463	173	120	1,303	72	1,487
자율관리	12	458	291	111	73	933	56	1,001
비율	10.7	83.7	62.9	64.2	60.8	71.6	77.8	67.3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016

한편, <표 2-9>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대상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과 비자율관리보세구역의 법규준수도 평가[13] 현황을 상호 비교한 것으로,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인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비율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90.6%, 비자율관리보세구역이 69.2%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법규준수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자율 및 비(非)자율관리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자율관리 보세구역	90.6%	6.0%	0.0%	0.0%	0.0%	0.0%	3.4%
非자율관리 보세구역	69.2%	23.1%	0.0%	0.0%	0.0%	0.0%	7.7%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015년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세구역 기준)

<표 2-10>은 2015년 한 해 동안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대상으로 보세구역 유형별로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을 비교한 것인데, 영업용 보세창고와 종합

12)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1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관세법 등 보세화물취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年 1회 원칙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A부터 G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Collection @ kmou

보세구역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수도 가장 많으며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업체 수도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보세구역 유형별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구분		A	B	C	D	E	F	G	합계
지정장치장	자율		1					2	3
	비자율	1							1
영업용보세창고	자율	49						1	50
	비자율	2	3						5
자가용보세창고	자율	12	1						13
	비자율	12	1					2	15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	자율	6	1						7
	비자율								
보세공장	자율	6	3						9
	비자율								
보세판매장	자율	1						2	2
	비자율								
종합보세구역	자율	32	1						33
	비자율	3	2						5
합계		124	13					6	143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2015년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세구역 기준)

<그림 2-2>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절차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그리고 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화물의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화물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보세사를 1인 이상 채용하는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보세구역에 대하여 세관장이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과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Collection @ kmou

<그림 2-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절차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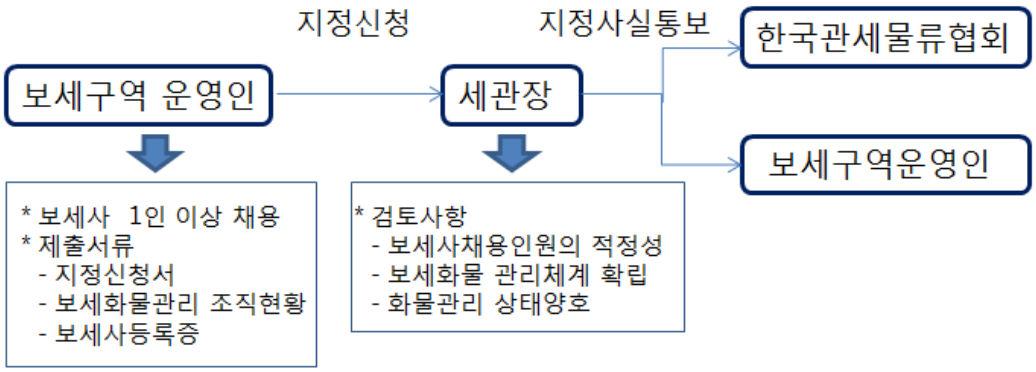

자료 : 이기희·유광현, "보세화물자율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13, p.213.

즉,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장은 지정요건사항 충족여부, 화물반출입량에 비례한 적정 수의 보세사 채용 여부, 보세화물관리 및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운영인의 법규수행능력 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기간은 보세구역의 특허기간까지로서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문서, 전자메일,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 등을 통하여 갱신절차와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여 자율관리 보세구역지정 갱신이 적정기한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의 <그림 2-3>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신규지정과 지정갱신에 관한 지정절차 흐름도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Collection @ kmou

<그림 2-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갱신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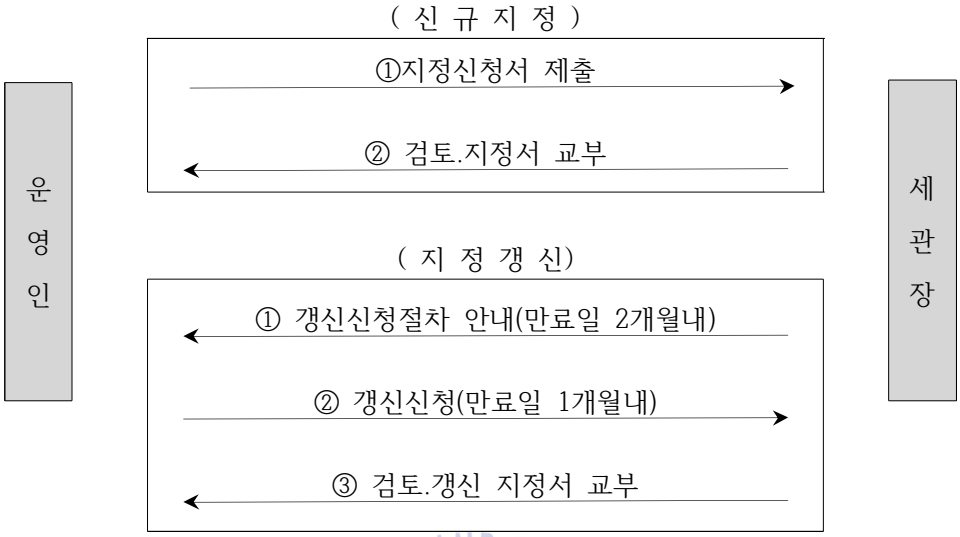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2016.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비자율관리보세구역과 비교하여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 보수작업 신청 및 수입신고전 확인신청 등의 절차가 생략되며, 재고조사 보고의무의 완화 및 운영상황의 점검 생략 등의 혜택이 있다. 여기에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혜택은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생략 혜택을 모두 포함하며, 보세공장 편의제공 및 절차생략 등 다음과 같은 혜택이 추가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1)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 등 절차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에 대한 반출입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보수작업 신청(승인)절차 생략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의 참여를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Collection @ kmou

의한 보수작업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기 및 포장에 대한 표시와 관련한 보수작업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원료 및 구성성분의 표시와 관련한 보수작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표시와 관련한 보수작업(원산지 표시는 제외),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대한 표시와 관련한 보수작업,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대한 표시와 관련한 보수작업, 벌크화물의 사일로(silo : 원통 모양의 창고)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을 위한 보수작업시에는 세관장에 대한 신청(승인)절차를 생략한다.

(3) 재고조사 보고의무 완화

일반보세구역은 자체전산시스템의 보세화물재고자료를 출력하여 실제재고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분기별로 1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나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고 횟수를 년 1회로 한다.

(4) 운영상황의 점검생략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매년 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한 운영사항을 소속 공무원이 그 운영상황을 실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은 운영상황을 보고만 하고 점검절차는 생략한다.

(5) 수입신고전 확인신청 생략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매매계약된 내용과 이상은 없는지 또는 파손이나 변질 등 이상은 없는지를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현품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세관장 신청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사 입회하에 수입물품을 확인하고 자체 물품확인대장에 그 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Collection @ kmou

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1)(2)(3)(4)(5) :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생략사항과 같음

(6) 보세공장 편의제공 및 절차생략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하여는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관할세관의 개청시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수출입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그 밖에 조건 등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사용전 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할 수 있고 장외작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고,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세관관할 구역내에 원료 및 제품보관을 위한 보세창고를 설치를 허용한다.

<표 2-11>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관련 규정

【관세법시행령 제176조 제3항 제2호】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에 대하여 반출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식품위생법」 제1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의료기기법」 제20조 및 「약사법」 제56조에 따른 표시작업과 벌크화물의 사일로(silo)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나.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年 1회로 완화
   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 생략
   라.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 신청(승인) 생략
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제1호 각목의 사항
   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37조에 따른 특례 적용
   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

Collection @ kmou

세관장이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대한 관리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에 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일차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으로 하여금 자율관리요건 등을 자율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자율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14]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자율점검표를 해당 연도 정기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절 보세사제도

1. 보세사제도의 도입배경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란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공인자격사로서,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이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급증에 따라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의 직접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1981년 보세사제도를

14) 자율점검표 작성시 ①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②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생략 준수 여부, ③운영인 등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Collection @ kmou

도입하였다. 보세사는 보세구역에서 세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시설안전과 보세화물의 입출고 및 보수작업 등을 입회·관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물품들을 적발하여 국경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추세 속에 국내에 도입된 AEO[15]제도하에서 보세사는 수출입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보세사에게 주어진 책무가 더욱더 막중해지는 추세이다.[16]

처음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보세사 자격요건은 4차례에 걸쳐 변화하였으며, 그 때마다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세관공무원에 한정하여 보세사를 선정함에 따라 보세사의 확보가 곤란하였고 업계의 낮은 호응 등으로 법상 제도로만 존치되어 오다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보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8년에는 일반인에게까지 보세사 응시범위를 확대하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표 2-12> 보세사 자격요건 변천

연도	보세사 자격요건
1981년	10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중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1988년	5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화물 취급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관세청장의 교육이수 후, 전형에 합격한 자
1993년	5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화물 취급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관세청장의 교육이수 후, 전형에 합격한 자
2013년	5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화물 취급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전형에 합격한 자
2014년	5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시험 전형에 합격한 자

자료 : 관세청, (구)관세법 제165조 및 관련고시를 토대로 작성

15)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16) (사)한국관세물류협회,「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2011, p.117

Collection @ kmou

<표 2-12>는 보세사의 자격요건 변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1981년에는 세관공무원 출신만 보세사로 채용될 수 있었지만 1988년에는 일반인도 보세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1993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인의 보세화물 취급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으며, 2013년에는 일반전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수요건을 삭제하여 경력요건을 한층 더 완화하였고, 2014년부터는 일반전형에서 보세화물 취급경력도 삭제하여, 현재는 시험전형에 합격만 하면 보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보세사 자격 개요

1) 보세사 자격취득 및 전형절차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장(보세사 전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세사에 대한 전형은 매년 실시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일 9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세관관서·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및 지회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보세사 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세사전형 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5과목 모두 매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보세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자가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러한 처분을 받은

Collection @ kmou

응시자는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재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보세사에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사시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물류협회 임직원, 관세사 중에서 구성한다.

위원회는 보세사 시험 전형의 시행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험의 출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보세사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미리 전형 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응시하는 자가 부담하며, 납부한 비용은 납부자가 전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보세사 자격증 교부 및 등록절차

보세사가 보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세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보세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그림 2-4>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세사 자격증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자격증교부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자격증을 교부하며, 전형합격자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합격자 본인에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등록절차는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률상 운영인의

dCollection @ kmou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표 2-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관할 세관에 하며, 기타 신원조회는 등록기준지에 하게 된다.

<그림 2-4> 보세사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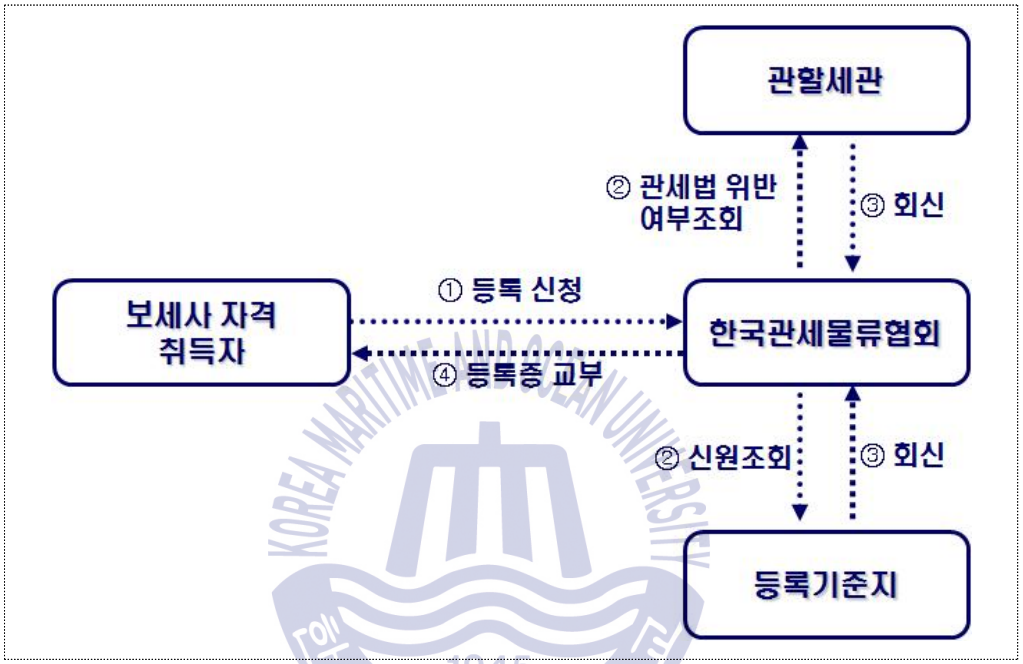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교재」, 2015.

<표 2-13> 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Collection @ kmou

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그 이후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입력한 경우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보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보세사의 역할과 의무

1) 주요 역할

보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보세화물 및 내국화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상 시설의 이상유무 및 출입자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보세사의 주요 직무는 보세화물 등에 대한 입회 및 확인업무 등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내 장치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Collection @ kmou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①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②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③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④ 각종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그림 2-5> 보세사 업무처리 흐름도 (보세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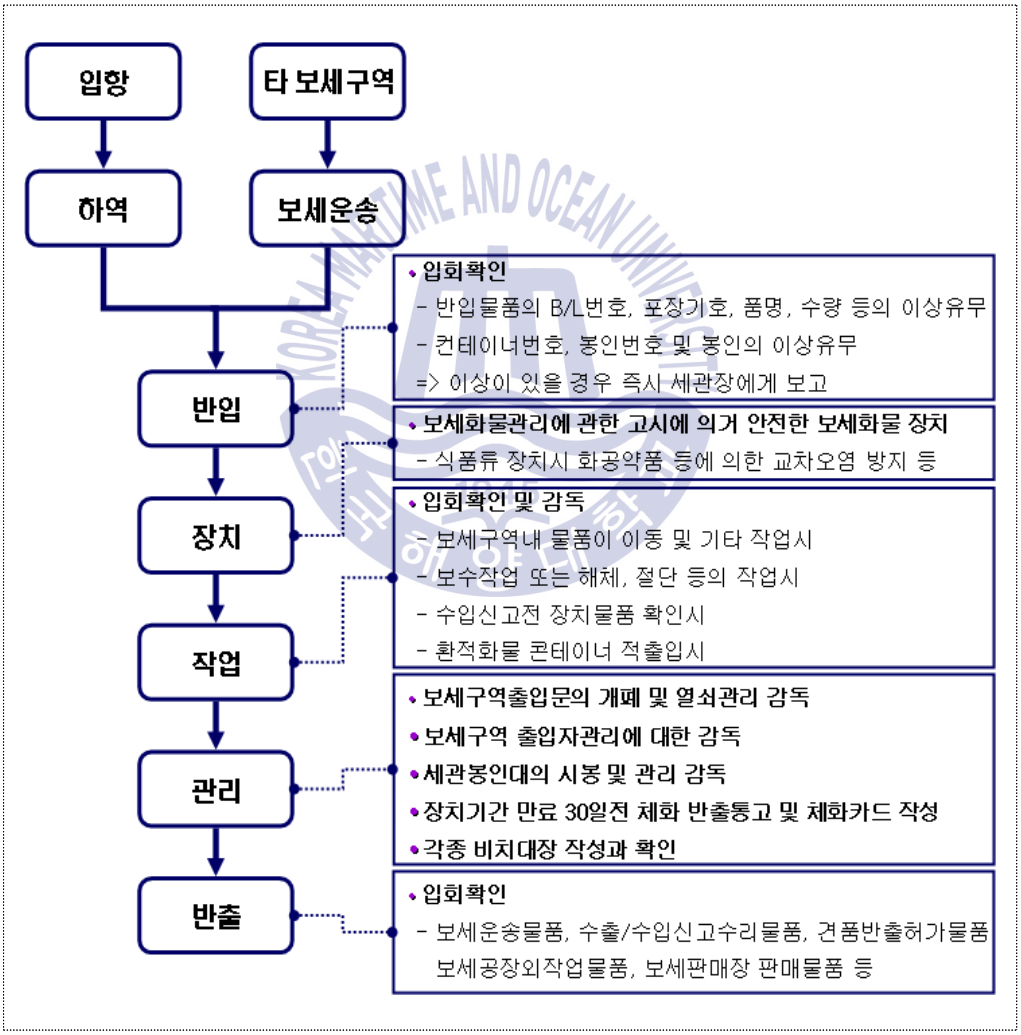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교재」, 2015

Collection @ kmou

보세사 업무를 화물의 흐름에 따라 도해하면 <그림 2-5>와 같이 풀이할 수 있다. 보세사는 입항 후 하역한 보세화물 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운송된 화물이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할 때부터 장치·작업·관리·반출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관리·감독하게 된다.

2) 보세사의 책임과 의무

보세사의 임무는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화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4년도부터는 보세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17]

현행 법령상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관장의 업무 감독 관련 명령을 준수하는 등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타업무 겸임 가능. 단, 영업용 보세창고 타업무 겸직 금지
(2)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 단, 영업용 보세창고는 세관개청시간과 당해 보세구역내의 작업 있는 시간에 상근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및 알선·중개 금지
(4) 보세사 타인대여 및 명의 사용 금지

17)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Collection @ kmou

제 3 장 보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보세사제도의 현황분석

1. 보세사제도의 일반현황

1) 보세사 전형

보세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다.[18]

우리나라 보세사제도는 1981.12.31.자 관세법 개정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으로 보세사 채용의무를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자격요건이 앞장에서 언급된 <표 2-12>와 같이 4차례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보세사 전형 합격률, 자격 현황, 등록 현황, 보세구역별 채용인원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표 3-1> 응시현황 및 합격률

연도	'88	'92	'95	'97	'99	'01	'02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응시자	1,722	708	411	509	445	309	379	659	510	522	572	600	519	631	990	1,396	1,909	2,904
합격자	1,714	664	372	491	435	285	363	604	479	475	508	375	323	288	505	530	266	510
합격률	99.5	93.8	90.5	96.5	97.8	92.2	95.8	91.7	93.9	91.0	88.8	62.5	62.2	45.6	51.0	38.0	14.0	21.4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상기 <표 3-1>의 보세사 전형 응시현황 및 합격률 추이를 보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2008년까지는 90% 전후의 합격률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60%대로 합격률이 대폭 낮아졌으며 특히 2014년은 14%로 전체 응시자의 85%

18) 이기희, 전게논문, 2009, p.112.

Collection @ kmou

이상 불합격자가 발생하여 보세사 전형 시행 이래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2006년부터 최근 10년 간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볼 때 합격률은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보세사 전체 인원 및 등록 현황

<표 3-2>의 2015년말 기준 보세사 자격 및 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보세사 전형 전체 자격 취득자 11,863명 중 2,906명이 보세사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보세사 자격 소지자의 24.5%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보세구역에 근무 중인 것이다. 자격취득현황은 일반전형(非세관공무원 출신)이 90.4%로 대다수를 이루었고, 실제 등록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일반전형 비중이 97.6%나 되므로, 대부분 일반전형으로 보세사 자격을 취득·등록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2> 보세사 자격 및 등록 현황

구분	자격취득자 수	등록자 수	등록비율
세관경력자	1,140명	71명	6.2%
일반전형	10,723명	2,835명	26.4%
합계	11,863명	2,906명	24.5%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016

2. 보세사제도의 운영현황

1) 보세사 근무현황

보세사 근무현황을 나타내는 <표 3-3>을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 2,906명의 보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1.21.자로 개정된「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운영의 자격) 제1항 제4호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보세사를 1인 이상 관리자로 채

Collection @ kmou

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을 때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2009년 보세사 등록수가 1,811명에서 2010년 2,141명으로 18.2%나 증가하였다.

그 후에도 보세사 채용 의무화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1월 보세창고에서 채용 의무화가 되었고 2012년 6월에는 보세공장에서도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보세사의 등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보세사 근무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근무인원(명)	1,588	1,811	2,141	2,441	2,547	2,569	2,772	2,906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016

2) 보세구역별 보세사 등록현황

아래 <표 3-4>는 보세구역별 보세사의 등록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써, 전체 보세구역 1,456개 중 보세창고가 1,080개로 1,845명의 보세사가 근무하며 이는 전체의 69%에 해당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최근 3년 보세구역 수만 비교하였을 때, 보세구역의 수는 두드러진 증감을 보이진 않으나 등록 보세사 수를 비교하면 2013년에 비해 2015년은 49.4%의 증가를 보인다.

Collection @ kmou

<표 3-4> 보세구역별 보세사 등록 현황

('15.10월 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구역수	등록 보세사	구역수	등록 보세사	구역수	등록 보세사
지정장치장		63	8	66	17	67	33
보세 창고	영업용	522	614	524	774	544	958
	자가용	547	559	500	660	480	782
	컨전용	68	72	55	86	56	105
	소 계	1,137	1,245	1,079	1,520	1,080	1,845
보세공장		180	293	181	338	175	402
보세전시장		27				12	
보세건설장		6		4		5	
보세 판매장	출국장	17	15	18	25	21	56
	시 내	17	60	18	74	17	104
	외교관			1	2	1	2
	지 정	5	41	5	52	5	61
	소 계	39	116	42	153	44	223
종합보세구역		70	126	72	157	73	168
합 계		1,522	1,788	1,444	2,185	1,456	2,671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교재」, 2015.

제 2 절 보세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목적과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현행 보세사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보세사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Collection @ kmou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 및 김해시 소재의 보세구역에 근무하고 있는 보세사 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여간에 걸쳐 보세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세구역 종사자의 세관 방문시 설문지를 전달하여 Fax로 회신받는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객관식 문항이 20개이며, 주관식 문항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가 근무하는 보세구역 유형은 <그림 3-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88명 중 영업용 보세창고가 52.3%(46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뒤로 자가용 보세창고가 20.5%(18명), 보세공장이 9.1%(8명)를 차지했다.

<그림 3-1> 보세구역 유형별 보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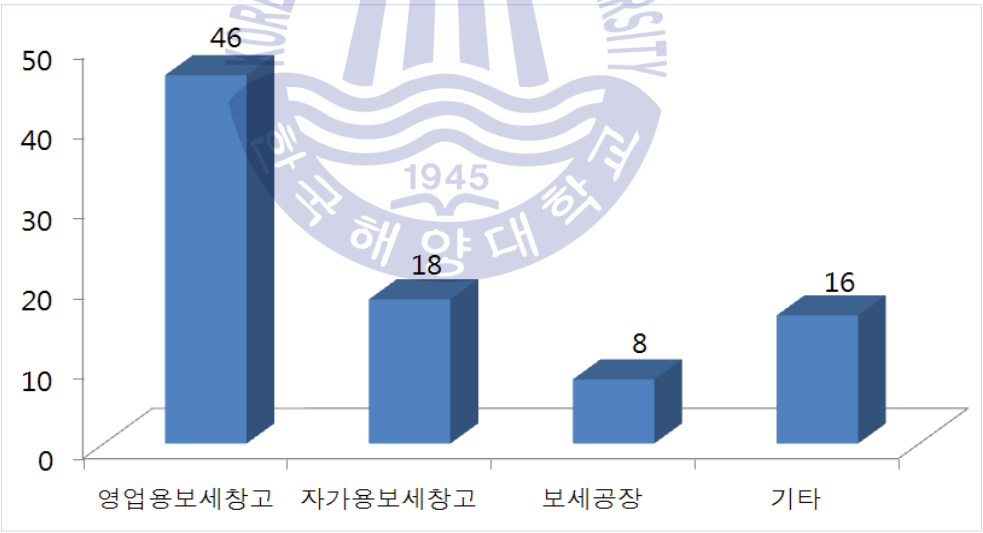

<그림 3-2>는 보세사들의 보세구역 근무경력을 보여주는데, 보세구역 10년 이상 종사자가 36.4%(32명)로 가장 많고, 그 뒤로 5~10년 미만 종사자 25%(22명), 1년 미만 종사자 18.2%(16명) 등의 순을 이루었다.

Collection @ kmou

<그림 3-2> 보세구역 근무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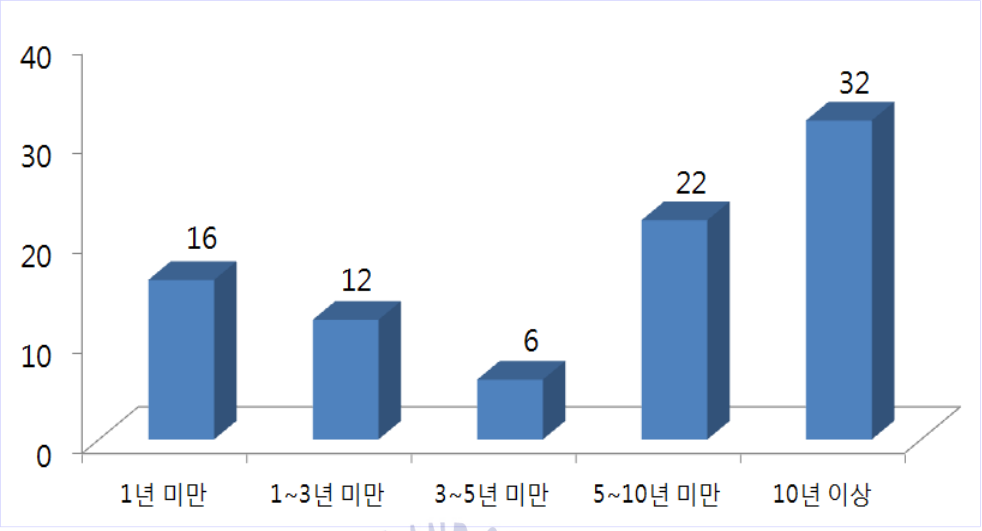

3. 분석결과

보세사제도에 앞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아래 <표 3-5>에서와 같이 45.5%(40명)가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을 꼽았고, 그 뒤로 '보세사제도'가 34.1%(30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동종업체간 형평성 문제'를 11.4%(10명),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을 6.8%(6명), 기타 2.3%(2명)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서 보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5>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요구사항

응답 내용	빈도	비율(%)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	6	6.8
동종업종간 형평성 문제	10	11.4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40	45.5
보세사제도	30	34.1
기타	2	2.3
합 계	88	100

Collection @ kmou

앞선 문항에서 '보세사제도'를 선택한 응답자(복수응답 문항)가 보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보세사 지위향상'이 34.6%(18명)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보세사 직무능력 교육보장'26.9%(14명), '보세사 시험방법 개선'과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이 19.2%(10명)씩 답하였다.

<그림 3-3> 자율관리보세구역 개선분야 中 보세사제도 개선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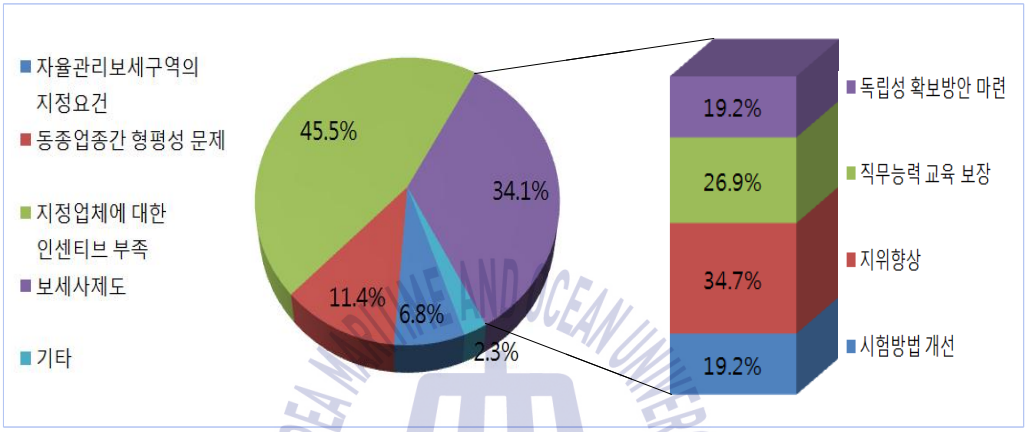

이는 <표 3-6>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보세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의견의 순위와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으나, '보세사 지위향상'이 43.8%(56명)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는 동일하다.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이 23.4%(30명)로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세사 직무능력 교육보장'18.8%(24명), '보세사 시험 방법 개선'14.1%(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6> 보세사제도의 개선 요구사항

응답 내용	빈도	비율(%)
보세사 시험 방법 개선	18	14.1
보세사의 지위 향상	56	43.8
보세사 직무능력 교육 보장	24	18.8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30	23.4
합 계(복수응답 문항)	128	100

Collection @ kmou

그리고 보세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아래 <표 3-7>과 같이 '자격수당 지급'과 '업무 독립성 보장'이 37.5%(33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근무조건 개선'11.4%(10명), '인사고과 가점부여'9.1%(8명)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7> 보세사제도의 지위향상 방안

응답 내용	빈도	비율(%)
자격수당 지급	33	37.5
인사고과 가점 부여	8	9.1
업무 독립성 보장	33	37.5
근무조건 개선	10	11.4
기타	4	4.5
합 계	88	100

보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세사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 내에서 보세사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하여 인사상처우, 보수·급여, 직장 내 지위 등에 대하여 3가지 추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표 3-8> 보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응답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보세사제도 전반	빈도	10	30	42	4	2	88
	비율(%)	11.4	34.1	47.7	4.5	2.3	100
인사상 처우	빈도	4	16	43	23	2	88
	비율(%)	4.5	18.2	48.9	26.1	2.3	100
보수·급여	빈도	2	12	48	24	2	88
	비율(%)	2.3	13.6	54.5	27.3	2.3	100
직장내 지위	빈도	4	16	46	20	2	88
	비율(%)	4.5	18.2	52.3	22.7	2.3	100

Collection @ kmou

<표 3-8>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응답하긴 하였으나, 보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1%로 차순위로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세사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모든 부분에서 '불만족'에서 응답수가 차순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보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비교하기 위하여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근무하는 보세사들의 응답과 자가용 보세창고에서 근무하는 보세사들의 응답만을 비교해 보면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그림 3-4> 영업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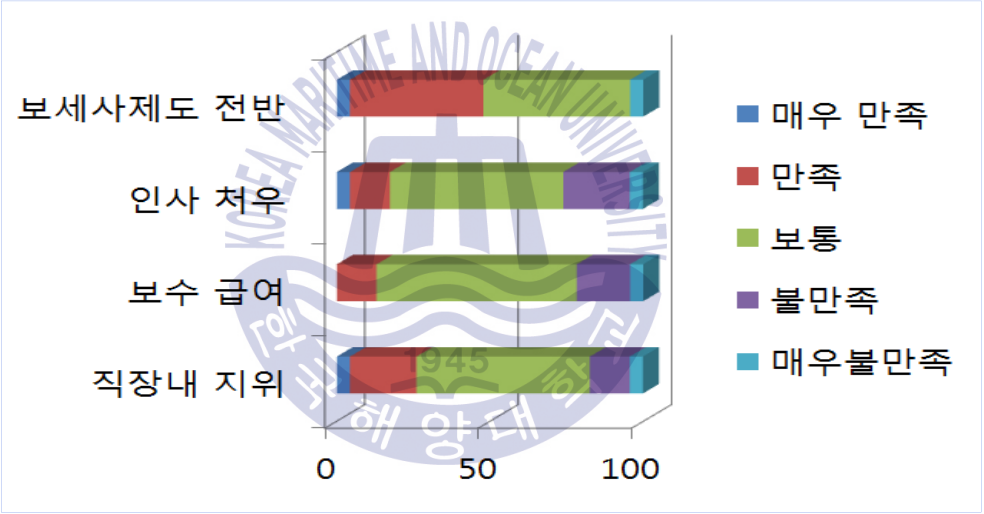

영업용 보세창고에 종사하는 보세사의 만족도를 <그림 3-4>에서 살펴보면, 보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보통' 47.8%(22명)과 '만족' 43.5%(20명)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인사처우와 보수·급여에 대하여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각각 21.7%(10명), 17.4%(8명)로 나타났다.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만족도는 <그림 3-5>와 같이, 보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응답자와 같이 '매우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인사처우에서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수가 절반을 차지했고, 보

Collection @ kmou

수·급여에 대하여서는 '불만족'이 가장 많은 답을 하였다.

<그림 3-5>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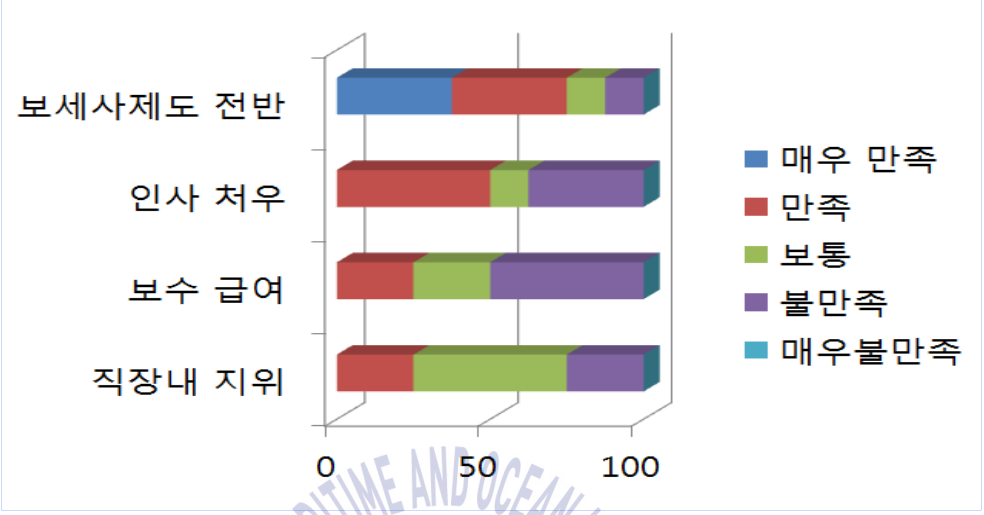

이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용 보세창고의 응답자수가 동일한 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보세사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보다, 보세사들 개개인이 느끼는 실제적인 만족도가 많이 낮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보수·급여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보세사 업무의 중요성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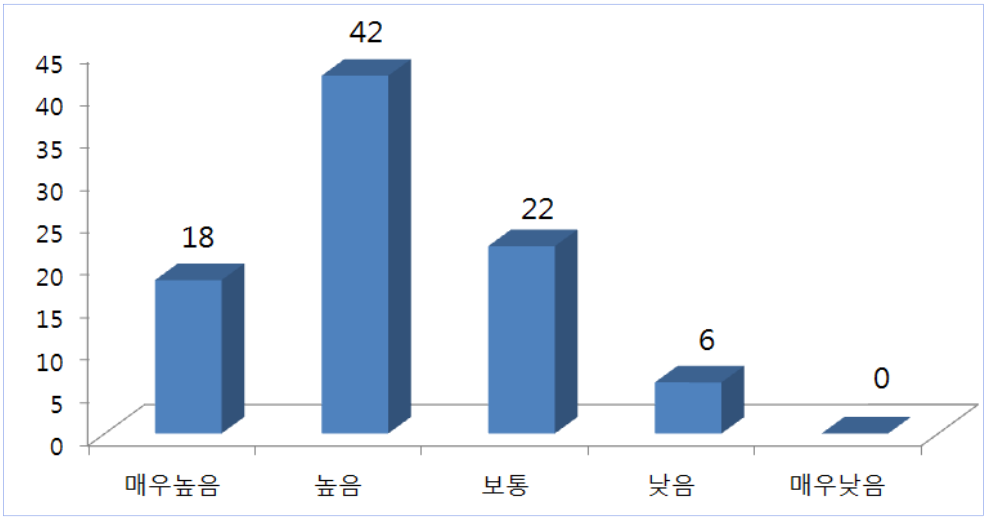

dCollection @ kmou

보세사들의 만족도 부분에서 보세사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보사세 업무의 중요도를 물은 질문에서는 상기 <그림 3-6>에서와 같이 '높음'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47.7%(4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5%(22명), '매우 높음' 20.5%(18명)의 순이었다. 이는 회사에서는 보세사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보세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인센티브(인사상 또는 금전적)는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용보세창고와 자가용보세창고에서 보세사 업무의 중요성 인식도에 대하여 아래의 <그림 3-7>에서와 같이 차이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세사들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보세창고별 중요성 인식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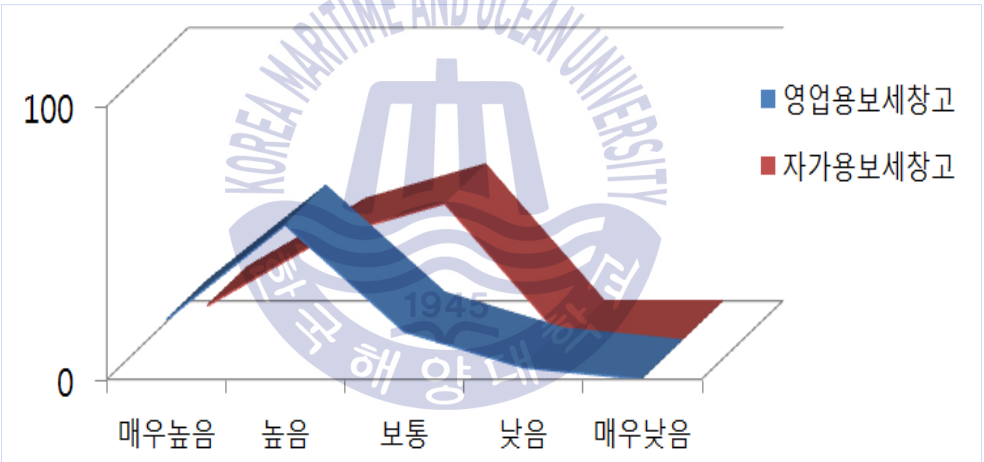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세사 업무의 독립성 부분에 대하여 '보통'이란 응답이 45.5%(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미보장' 29.5%(26명), '매우 미보장' 11.4%(10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추가로 '매우 보장', '보장', '보통'으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52명의 응답자들에게 추가 설문한 본인 스스로의 독립적인 행동여부에 대하여 소신있는 업무행위 가능성에 대하여 조금 특이한 결과가 확인 되었다.

Collection @ kmou

<그림 3-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42.3%(22명)나 되는 응답자가 미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가능' 30.8%(16명), '보통' 11.5%(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미응답수가 많다는 것은 소신있는 업무행위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었거나 답변시 '고민을 하다가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감히 추측해 본다.

<그림 3-8> 보세사의 업무상 독립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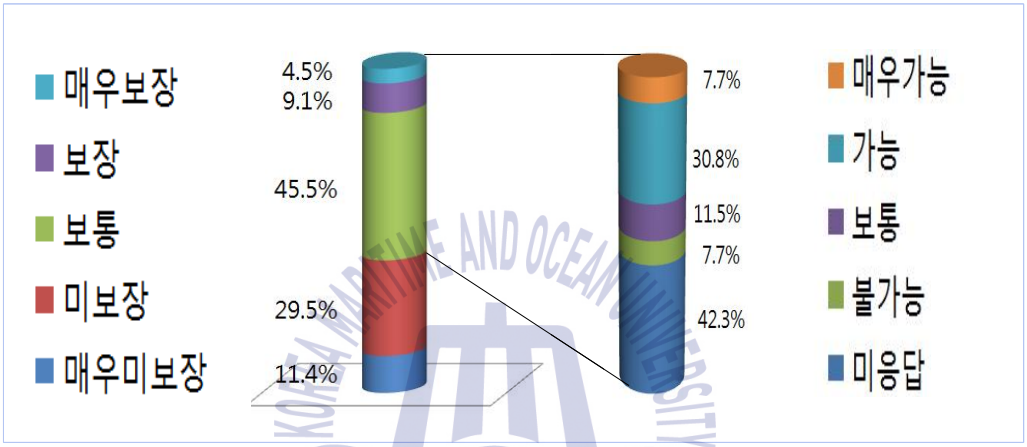

제 3 절 보세사제도의 문제점

1. 보세사의 종속성 문제

보세사제도는 관세행정 당국이 부족한 세관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여 관세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건전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당초 도입 취지는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상주시켜 보세화물 관리·감시업무를 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즉, 보세구역내에서 보세사의 화물 감시업무는 보세사의 업무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로써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ollection @ kmou

또한 이러한 감시업무는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감시의 대상에는 운영인의 탈법·위법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현재 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보세사는 모두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세사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업무기반이 원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보세사가 타의에 의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다음의 <표 3-9>는 언론 보도된 보세사의 부정무역 연루 사건을 몇 가지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주로 농수산물 밀수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은데, 냉동창고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밀수입되면서 식품안전검사를 회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표 3-9> 보세사 위법행위 언론보도 내용

연번	보세사 위반내용	출처
1	수산물검사 불합격된 '물먹인 中냉동조기'를 반송하는 것으로 위장, 수산물검사 합격한 다른 수산물과 바꿔치기하는 밀수입 방조	뉴시스(2004.5월)
2	인터넷쇼핑몰 밀수조직과 결탁, 30억원 홍콩산 짝퉁 명품 밀수	부산일보(2010.1월)
3	베트남産 꽃게를 정상 수입신고한 한치와 혼적하여 바꿔치기 밀수하는 것을 방조	조세일보(2010.5월)
4	밀수조직과 결탁, 低세율의 다대기 高세율의 고춧가루(120톤, 시가10억원)를 숨겨 밀수입	파이낸셜뉴스(2010.6월)
5	10억원대 中장뇌삼 밀수, 통관과 유통역할 담당	뉴시스(2010.7월)
6	컨테이너 바꿔치기 수법, 6천억원 짝퉁밀수에 가담	연합뉴스(2012.1월)
7	수입물품 유통업체 무단반출(밀수입) 472회 방조	조세일보(2014.9월)

자료 : 각 언론사 보도 내용

현실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보세사에게 화물의 무단반출이나 세관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지시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부당한

Collection @ kmou

지시를 보세사가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세사는 운영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이므로 회사내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고용주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세사가 세관직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 감시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와 운영인과의 고용관계를 분리시켜 보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는 보세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운영인에 의해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세사를 운영인으로 부터 완전하게 독립시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실을 고려하여 보세사의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실효성 있는 방안 제공이 절실하다.

2. 보세사 전형의 변별력 부족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19]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분야의 국가공인자격사는 국가로부터 당해분야에서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된 국가공인자격사인 것이다.

더 나아가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보세화물 통관에 필요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세관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현장실무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세사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응시자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역량 보유 여부를 더욱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여년간 보세사 전형 합격률은 90%대에 이를 정도로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낮았으며, 2009년 이후인 최근 몇 년간만

19) 대한민국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백서」, 2006.

Collection @ kmou

합격률이 조금 조정된 추세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합격자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전형의 변별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보세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세사 전형의 낮은 난이도로 인하여 자격취득의 용이성 때문에 고용주가 전문 화물관리인으로서의 보세사를 새로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현 세태를 만연케 한 가장 큰 요인임이 분명하다.

취득이 용이한 보세사 전형이 오히려 보세사 스스로의 권익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 방안 부재

보세사는 수입통관되지 않은 보세화물을 관리하고, 수출입 관문의 최첨단에서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여타의 자격사에 비하여 더욱 전문성을 지니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AEO로 공인된 보세구역에서 보세사는 자체평가서 작성, 직원교육 등 수출입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세사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인격을 겸비하여야 한다.

보세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보세사의 업무가 완전히 사적인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관세행정 보조’라는 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며,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체계적인 관리방법과 보세구역 안전관리 방법 등 보세구역 전체의 물류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보세구역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Collection @ kmou

그리고 보세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세 및 무역관련 법규는 그 특성상 변화하는 관세·무역 환경에 적합하게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보세구역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각종 고시·공고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세사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세사는 최신 물류기법, 수출입물류 동향, 규정 등에 대해 정통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정보들은 상시 변화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세사는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입수하여 이를 당해 보세구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세사가 자격 취득 이후 외부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2005년까지는 '보세사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법규에 의한 재교육 기회가 2년마다 1회 부여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보세사 보수교육이 폐지[20]되어 현재는 보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재교육 기회가 없어졌다.

보세사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가 각 지역 본부세관 등과 함께 전국의 등록 보세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보세사 직무능력향상교육'도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자발적 교육참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호응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표 3-10>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 현황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이수율(%)
2013	2,569	934	36.4
2014	2,774	436	15.7
2015	2,906	421	14.5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통계자료

20) 규제개혁장관회의('06.6.23)에서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세사 보수교육 등이 폐지 결정되어,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06.12.22)시 제4-3조(보수교육)조항이 삭제되었다.

Collection @ kmou

보세사 직무교육은 매년 10~11월경 서울, 인천, 대전, 부산 4개 지역에서 4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표 3-10>을 살펴보면 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 3년의 이수율이 평균 21.7%에 불과함으로써 교육시행의 취지를 퇴행시키고 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보세사에게 일단 부여된 자격은 자격취득 후 별도의 사내외 교육이나 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항구적으로 유지되며, 자격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보세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세사는 지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갱신에 따른 재심사 기능이 없다. 세관에서 年 1회 정기 감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지정된 이후에는 자율관리 능력에 대한 주기적 검증절차가 없어 관리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보세사업무의 공적 측면과 보세사가 보세화물관리에 정통한 국가공인자격사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격취득 이후 정부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세사에게 수입통관되지 않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운영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보세사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지에 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세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4. 보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 문제

보세사는 다양한 직급으로 회사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낮은 직급에 속해 있고, 보세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잡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내에서 보세사를 보세화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자격사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낮다고 볼수 있다.

현업에서 실제로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보세사는 평균적으로 일반 대리·과장 정도의 직급 정도로 근무하고 있어 회사내에서도 그 지위가 크게 높지 않고 일부 보세구역에서는 운영인이 보세사를 고용한 후, 이들에게 본연의

Collection @ kmou

직무와 함께 지게차 운전, 상하차작업, 영업 등 보세사 업무와 무관한 각종 잡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회사내에서 동료들간에도 보세사는 전문자격사가 아닌 단순노동을 함께하는 동료 또는 회사내 보조업무 수행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영세한 물류기업의 특성상 사내에서 보세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과다한 잡무를 수행함에 따라 당해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사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사 직원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인센티브로서 일정금액의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사를 자격증 미취득자와 구별없이 대우하고 있다.

보세구역운영인은 보세사 채용을 정부가 부과한 규제 정도로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보세구역 운영인들 간에는 보세사가 필요하면 자사 근무자 중 요건을 갖춘 직원을 전형에 응시토록 하여 쉽게 자격을 지닌 직원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 취득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동기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해 보세구역내에서 보세사의 지위는 무자격자와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높은 합격률 및 보세사 자격 취득 후의 교육 부족, 보세사의 독립성 결여 등과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보세사는 현직의 유지나 진급 등을 이유로 중간관리자나 상급 임원의 지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심지어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보세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세사 자격의 존재가 거의 인식되어 있지 않아 보세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를 파악한다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보세사가 스스로 자격이나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Collection @ kmou

제 4 장 보세사제도의 개선방안

보세사제도가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보세사제도는 관세행정당국이 부족한 인력을 외부 전문 화물관리인인 보세사를 보세구역에 상주시켜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업무를 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방안 부재, 보세사 자격시험의 전문성 및 변별력 부족, 보세사의 전문성 강화·유지 문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세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보세사 자격의 질적 향상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세관 공무원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실무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자격을 부여할 때 고도화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더욱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보세사 전형 합격률이 90%대로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낮아,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변별력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세사의 위상과 처우에서도 여타 다른 자격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형의 난이도가 높아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일수록 자격증 소지자가 더 우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사회적인 보상을 받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로 사회적 혹은 무역업계 통념상 전문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세사 자격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현재 관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20%이하로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아래 <표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관세사 2차 시험은 서술형

Collection @ kmou

시험으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1차 시험 합격률만 비교해 보아도 2013년도 20.0%, 2014년도 19.3%, 2015년도 17.7%로 보세사 전형과 비교하면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관세사 1차시험 합격통계

연도별 / 차수별	1차 시험 합격자			2차 시험 합격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1	1,894	225	11.9%	436	75	17.2%
2012	2,055	274	13.3%	516	75	14.5%
2013	2,689	539	20.0%	819	77	9.4%
2014	2,952	571	19.3%	1,080	90	8.3%
2015	3,754	666	17.7%	1,181	91	7.7%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관세사 합격률

보세사 자격도 전문성을 가진 국가전문자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FTA·AEO 등 급변하는 수출입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심화하여 기존의 1차 객관식시험에서 1차, 2차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시험으로 전문지식 습득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보세사 자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보세사전형 합격률이 최근 3년간 다소 하향되었지만, 합격률 편차도 매우 컸다. 합격률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도 결국은 난이도 조정에서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난이도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만 하겠다.

보세사 자격이 단기적으로 관세사나 세무사처럼 또는 그 밖의 전문자격과 같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긴 어렵다 하더라도 또는 그 자격들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 지라도, 보세사 전형의 난이도 상향 조정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보세사의 처우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Collection @ kmou

제 2 절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가간 또는 지역간 FTA체결 확대, AEO제도 신설 등 세계무역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보세사는 직무의 특성상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세 및 무역관련 법규는 특성상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시각각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세구역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각종 고시 및 공고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1월에서 3월 동안 관세청에서 각종 행정규칙을 입안예고한 건수는 27건으로 이는 한 달마다 약 10개의 고시가 개정[21]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보세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업에서 보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이를 숙지해야 하며,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보세사의 업무도 시시각각 변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세사제도하에서는 일단 보세사 자격증이 부여된 이후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유지되고, 외부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또한 자율이수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다.

이처럼 자격증 취득 후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2005년까지는 "보세사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법규에 의한 재교육 기회가 2년마다 1회 부여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보세사 보수교육이 폐지되어 현재는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보세사 전형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고급인력을 보세사로 끌어들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자격 취득시 숙지한 전문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수출입물류 환경에서 보세사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격 취득 이후의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수행될 때 비로소 보세사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22]

---

21)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행정규칙행정예고

Collection @ kmou

보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의 의무화 추진과 보세사 등급제도 등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의 의무화 추진

2005년까지는 보세사를 대상으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고, 청렴성 제고 및 관세법규의 미숙지에 따른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사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재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다 2006년부터는 의무교육이 폐지되고, 현재는 보세사 직무교육이 자율이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3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21.7%에 불과하고 이수율 추이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교육시행의 취지를 퇴색시키며 교육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세사 자율에 맡겨졌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종전과 같이 일정 주기로 보세화물관리교육, 보세사 직무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보세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보세사 시험의 응시요건인 '기본교육'과 '보세화물 관리업무 종사경력'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기업에 소속된 보세사들에게 많은 시간의 집합교육을 강제하다 보면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업체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현업 종사자인 보세사들의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공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 가능한 사이버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관세행정 지식 및 보세화물 관리규정과 업무에 대하여 교육하며, 최소한의 집합교육을 편성하여 개정 관세행정 법규 안내나 관세법규 위반 및 처벌사례를 포함한 청렴성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 여건상 제도적 의무교육의 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교육이수에 대한 배점을 상향

22) 이기희, 전게논문, 2009, p.123.

Collection @ kmou

조정한다면, 기업차원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보세사들의 교육 이수를 권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세사 등급제도 도입을 통한 변별력 확보

보세사 자격의 등급화·차별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보세사가 지닌 전문지식과 경력 등의 정도에 따라 보세사 자격을 1급, 2급, 3급 등으로 등급화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보세사의 전문지식 부문은 자격시험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며, 경력부문에서는 일정 근무기간 동안의 경고횟수, 교육이수여부, 업무실적, 포상이력 등을 통합하여 측정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상승이나 등급하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영인은 보세사의 능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준에 적합한 직무를 담당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차별화된 직무에 합당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세행정당국은 보세사의 등급을 바탕으로 보세구역의 법규준수도 평가에서나 보세구역 특허 심사시 보세사 등급에 따른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면 업체에서도 보세사의 상향등급 취득을 지원할 것이고, 보세사도 자발적으로 상향등급의 자격을 취득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며, 자율적 학습을 통하여 보세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kmou

제 3 절 보세사 자격의 사회적 위상 제고

1. 보세사의 직무 권한 확대를 통한 세관행정 적극 활용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아래 <표 4-2>에서와 같이 지정요건이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보세사 채용, 전산시스템 보유 이렇게 두 가지 형식적 요건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라는 조건 추가로 결국 세 가지 요건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법규준수도 부분에서 좋은 점수만 획득한다면 대부분의 보세구역들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용이한 요건이며,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업체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를 원한다면 지정 신청시 특별한 검증이나 노력 없이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4-2>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법령(2015.12.01.)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지정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채용
   나.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WMS, ERP 등) 구비
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1호 가목 및 나목 충족
   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 해당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다. 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할 것

또한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도 고시에서 명확히 구분은 되어 있으나, 종합인증우수업체(AEO공인업체)와 보세공장의 경우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Collection @ kmou

지정되어 있을지라도 전년도 수출비중이 50%이상(또는 수출신고금액 미화 1천 달러 이상)이고 기업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이나 업무처리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세관에 제공한다는 추가요건만 충족되면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는 지정요건도 매우 간소하다고 볼 수 있겠다.

좀 더 쉽게 해석해 본다면 일반과 우수로 나뉘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구분은 AEO공인업체 여부뿐이며, 보세구역 중에서는 보세공장의 경우에만 상기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과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의 구별은 일반과 우수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율관리보세구역 자체도 앞의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한 절차생략 이외의 혜택은 없기 때문에 자율관리능력 향상 유인 제공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볼 수 없다.[23)]

결국,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업체에게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정된 이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할 의지를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자율관리보세구역도 자율관리 능력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한다면, 기업이 스스로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일반과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여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게는 절차생략 혜택 이외에도 더 많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추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업계에서도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보세사 직무 권한 범위를 확대하여 보세사의 위상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3)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2014.12.19.일자 개정에서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생략 부분에서 '과징금 금액 경감' 및 '행정처분의 경감적용'등의 혜택 조항이 삭제됨

Collection @ kmou

앞 절에서 언급한 보세사 등급제도 도입과 함께 결부하여 논하여 본다면,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는 1급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요건으로 하면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소속된 보세사보다 보세사에게 많은 업무권한을 부여한다면 등급에 따른 보세사의 차등을 통해 보세사의 스스로 등급상승이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래의 <표 4-3>은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근무하는 1등급 보세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세관직원의 업무를 생각해 본 것이다.

<표 4-3> 세관직원으로부터 보세사로의 이전업무 개선방안

-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신청 물품검사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28, 35조 (물품검사)
- 환적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감독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0조 (보수작업)
-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시 입회 및 물품검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 (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 부정 유출 우려물품 폐기감독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에 관한 고시」제43조 (폐기감독)
- 보세운송 도착 및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8조 (보세운송)

이와 같이 보세사에게 보세화물 관리자로서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특혜가 부여된다면, 사내에서의 보세사의 지위와 자격의 사회적 인식까지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결국 보세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지게 될 것이다.

Collection @ kmou

2. 보세사 협회 결성 및 법규일원화 추진

오늘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협회'[24]라는 두 글자만 검색해 보아도 1000여 건이 넘는 각종 협회 사이트가 검색되어 나온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협회의 존립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에서 언급된 관세사를 예로 들어 본다면, '한국관세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관세사들의 품위·자질의 향상 및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법정법인이다.[25]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세사 직무의 지도와 감독을 비롯하여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 수출입통관에 대한 상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6] 그리고 관세사 관계법규로는 「관세사법」과 「관세사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세사회와 관세청의 합동 워크숍(Workshop)을 개최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부응하는 관세사의 역할제고 및 현안사항과 통관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세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세사회도 처음부터 그 위상이 드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1975년 통관업자제도에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제도로 전환된 후 관세사들은 일선현장에서 수출입신고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사와는 달리 독립된 법률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관세사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관세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 독립된 법의 제정을 건의 하였으며, 이에 현행 관세사법이 1996년 법률로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27]

이와 같이, 현재의 보세사 관련 제도에는「「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으나, 이 고시는 관세법」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24) 협회(協會) :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
25)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cba.or.kr), 설립근거
26) 한국관세사회, 「關稅士會三十年史」, 2006.
27) 현행 관세사법은 법률 제4984호로서, 1995.12.6. 제정공포되고 1996.7.1.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Collection @ kmou

제185조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에 그치면서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보세사도 개인이 모여 하나의 힘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보세사회'와 같은 협회를 결성하고 독립법인 '보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세사 개개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크게는 관세행정발전에도 보탬이 되면서, 보세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법제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뿐더러 단기간에 이루어 내긴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보세사 의무 규정의 일원화의 행정규칙의 정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겠다.

현행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제12조(보세사의 직무), 제13조(보세사의 의무)가 규정[28]되어 있으며 아래 <표 4-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종 고시에서 보세사의 직무나 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되고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동하여 행정규칙의 정비가 일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15.12.30.일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인과 보세사의 의무규정이 남아있다.

<표 4-4> 보세사 관련 규정의 최근 변화내용

현행 행정규칙 및 조항	내용	비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세사의 직무	삭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보세사의 의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보세사의 임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의 3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현행 유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사의 직무	추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	

28) '13.7.3.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 기존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고시의 제2-5조(보세사의 직무)와 제2-7조(보세사의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동하여 제12조(보세사의 직무)와 제13조(보세사의 의무)로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15.7.1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 제5-3조(보세사의 임무)규정도 삭제되었다.

Collection @ kmou

현행 보세사 제도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에게도 채용의무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보세사의 직무·의무 등 보세사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모든 보세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원화된 법제화로 이루어져 관리 되어야 하겠다.

제 4 절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계기 제공

제3장의 문제점 분석에서 현재 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보세사는 운영인에 대한 피고용 신분으로 운영인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즉,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정한 보세화물관리에 꼭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보세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운영인과 보세사의 고용관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도입시부터 운영인에게 고용인의 지위에서 보세사의 채용을 요구하였고, 이 같은 현실에서 보세사와 운영인의 고용관계를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보세사의 입장에서는 퇴사를 의미하므로 이를 상쇄할만한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없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는 운영인으로부터의 신분상 완전한 독립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보세사 영리법인 설립·운영

앞서 언급하였듯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의 채용이 필수불가결한 조건[29]이다. 세관의 업무영역이 감시, 통관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지금은 FTA, AEO 등으로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보세구역의

29) 보세사채용 의무 : 자율관리보세구역('82.1), 보세창고('10.1), 보세공장('12.6)

Collection @ kmou

관리감독에 투입되는 인원은 더욱더 한정되어 축소 될 수밖에 없어 그 만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영세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사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및 4대보험 등 기업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보세화물관리법인' 등 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속한 보세사를 영세한 특허보세구역에 파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법인에서 보세사를 파견하면 보세사 채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영세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기업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세관은 보세사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벗어나므로 객관적인 보세화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2. 보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앞 절에서 보세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방안으로 보세사의 직무 권한 확대를 논의하였는데, 권한의 강화는 결국 의무와 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 권한이 커질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커지며, 이는 또한 위법·탈법행위 발생시 징계책임을 강화하여 법규준수도 제고와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0조(등록취소)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고 등록 취소된 자의 경우 재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제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보완을 통해 징계처분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표 4-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 이내에 다시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견책, 6월 범위내의 업무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시행한 경우가 많다.

Collection @ kmou

<표 4-5> 보세사 2회 이상 경고처분자 현황

(기간 : 2006~2015)

구분	2회 위반	3회 위반	1년 이내 다시 경고처분 받은 자	
			인원	징계처분자
인원(명)	21	2	11	0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015

관세행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 및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 등의 중요범죄 가담자의 경우 보세사 자격증 취소제도[30]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보세사의 징계는 견책, 6월의 범위내의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3가지 종류만 있을 뿐이지 보세사 자격증 자체에 대한 취소는 없다.

<표 4-6>는 최근 5년간 전국 보세사의 징계 현황이다.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고'에만 그칠 뿐, 보세사 개인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징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징계 건수만 보아도 점점 수가 줄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을 알 수 있다.

<표 4-6> 최근 5년간 보세사 징계 현황

(징계처분일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고	37	29	35	16	14
견책	1	1	1	2	
업무정지		1			
등록취소					
합계	38	31	36	18	14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2015

30) 자격취소 가능 자격증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약사, 한의사

Collection @ kmou

보세사의 위반행위시 제재는 아래 <표 4-7>에서와 같이 등록취소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표 4-7> 보세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등록취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5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통보를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14조(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게 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보세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규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상기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세사 자격증 취소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강력한 처벌로서 보세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운영인의 불법적인 지시에 응하지 않고 소신 있는 보세화물관리업무에 열중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Collection @ kmou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수출입물동량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대 경제에서는 물류비용 절감이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9·11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세계물류 환경의 트렌드는 '신속·원활'에서 '안전'으로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채권의 확보 및 밀수방지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수출입화물(보세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세화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관세행정당국이 보세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무역 기조에 부합하지 않고 복잡한 현대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므로, 민간 자율적인 관리방식을 주로 하고 정부는 간접 관리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를 위해 1982년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자율적으로 화물관리·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세관의 통제·관리를 간소화함으로써 보세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성패는 운영인이 얼마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세사이다. 보세사는 화물 관리에 관한 전문관리인이자,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관세국경

Collection @ kmou

최일선에서 보세구역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공인 자격사이다.

즉, 보세사는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함께 안전한 화물 관리를 통해 국가안전을 수호한다는 공공성, 그리고 직무상 소속된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중립의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세사가 밀수나 관세포탈에 개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보세사의 직무상 독립성 혹은 신분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나아가 국가공인 자격사로서 윤리성 저하 및 사회적 위신 문제 등 보세사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및 현업 종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보세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보세사는 피고용인 신분으로서 고용주인 운영인에게 직업상 종속되어 직무수행에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기 어렵다.

둘째, 보세사 전형의 난이도가 낮아 변별력이 부족하여 전문 자격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자격취득이 용이하므로 보세사를 신규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화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보세사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하는 상황이 만연하게 되었다.

셋째,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강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없어 급변하는 수출입 물류 환경에 적응하기 전문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정기적인 윤리교육 혹은 청렴교육을 받지 않아 초심을 잃고 본분을 망각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국가공인 자격사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나 금전적 보상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저조하여 보세사 스스로가 자긍심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불순한 유혹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Collection @ kmou

따라서 보세사가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서 중립적 위치에 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4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보세사 자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세사 전형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합격률은 90%대로 지나치게 높아 자격의 질적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이는 보세사의 위상과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보세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전형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합격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급변하는 세계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유지·강화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까지는 보세사 보수교육을 통해 2년마다 1회 교육기회가 부여되었으나 2006년 이를 폐지하였는데, 다시 부활시킬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난이도 상향조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기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비로소 보세사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보세사가 지속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세사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보세사 능력에 따른 차등적 혜택을 부여한다면 보세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보세사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보세사 자격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세사의 직무상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그리고 회사 내에서 보세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보세사 등급제도와 결부시켜 생각했을 때, 높은 등급 보세사에게 더 많은 자율적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결국 보세사가 소속된 보세구역에 특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직장 내 보세사의 지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스스로의 권익신장을 추구하는 보세사 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제시해 보았다. 협회를 통해 하나의 힘있는 목소리로 독립된 보세사법을 제정 추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으나 아직은 여러 요인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해 있는 보세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Collection @ kmou

으로 관리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세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보세화물관리법인이나 보세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에 등록된 보세사법인으로부터 파견을 받으면 관세법상 보세사를 채용한 것으로 의제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보세사는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보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인 보세사 자격취소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전문자격사제도인 보세사에 대하여,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심층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렇지만, 88명의 보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보세사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헌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해외의 사례와 비교분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때문에 가장 실증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세청 내부자료의 접근에 제한이 있어 실제 사례분석이나 심층적 통계자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세사제도에 대한 심층적 현황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되어 보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세사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입장에서 더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kmou

참고문헌

<국내문헌>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보세화물관리」, 2015.

관세청,「보세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교재」, 2015.

관세청,「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관세청,「실효적 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 2013.

관세청,「자율관리 보세구역 개편 방안」, 2013.

대한민국정부,「국가인적자원개발백서 2006」, 2006.

(사)한국관세물류협회,「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2011.

서동균, 이기희, 윤재윤, 차현주,「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11.

이기희,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 경향에 따른 보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관세학회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09.

이종익,「관세법 해설」, 협동문고, 2011.

이기희, 유광현, "보세화물자율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무역연구원」, 2013.

정중희,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한국관세사회,「관세사회 30년사」, 2006.

<인터넷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go.kr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

한국관세물류협회 http://www.kcla.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산업인력공단-관세사 www.q-net.or.kr/site/customs

Collection @ kmou

<참고자료>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사와 보세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운영인 및 보세사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및 개인의 응답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이 결과는 학술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평소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 구 자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성지현
(T: 010-9345-3791, F: 051-620-1128)
지도교수 : 신한원 교수

1. 귀하가 근무하는 보세구역 유형은?
   ① 영업용보세창고(일반) ② 영업용보세창고(냉장·냉동)
   ③ 자가용보세창고 ④ 보세공장
   ⑤ 기타( )

2. 귀하가 보세구역에 근무한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3. 귀하가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한지는 얼마나 되었나?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4. 귀하가 보세사 자격시험을 취득한 년도의, 보세사 전형 시험의 난이도는 적당했다고 생각되는가?
   ① 매우 적합 ② 적합 ③ 보통 ④ 부적합 ⑤ 매우 부적합

Collection @ kmou

5. 귀하의 '보세사' 자격증 취득 사유는?

① 보세구역에 취업하기 위해(취업 준비시)
② 보세구역 종사자로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③ 보세구역에 근무 중 운영인(고용주)의 강요에 의해(보사세 채용의 의무화)
④ 보세구역에 근무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위해(Ex: 급여나 인사상 인센티브 등)
⑤ 기타( )

6. 귀하가 생각하는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분야는?

①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 ② 동종업종간 형평성 문제
③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④ 보세사 제도
⑤ 기타( )

7.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만 보세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다가 최근에는 보세창고(2010.1)와 보세공장(2012.6)에 까지 확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세사 채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경향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적합 ② 적합 ③ 보통 ④ 부적합 ⑤ 매우 부적합

8. 현행 '보세사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법·제도적 측면)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1.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보세사로서 **인사상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2.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보세사로서 **보수 및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3.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보세사로서 **직장내 지위**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4. **직장에서는** 보세사 업무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매우 중요 ② 중요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Collection @ kmou

9. 보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가능, 복수선택시 우선수위를 적어주세요)

① 보세사시험 방법 개선 ② 보세사의 지위향상
③ 보세사 직무능력 교육 보장 ④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⑤ 기타( )

10. 보세사는 제도 도입 취지상 보세화물의 엄격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인의 고용인에 불과하다.
귀하는 보세사로서 업무상 독립성이 충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보장 ② 보장 ③ 보통 ④ 미보장 ⑤ 매우 미보장

≪ ①, ②, ③ 응답자≫

10-1. 보세사 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귀하는 현실적으로 운영인의 위법 행위을 알게 되었을 때, 세관에 불법행위를 신고와 같이 소신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가능 ② 가능 ③ 보통 ④ 불가능 ⑤ 매우 불가능

≪ ④, ⑤ 응답자≫

10-2. 보세사 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예시: 독립된 별도의 사무실, 독립된 직위 부여)
( )

11. 보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자격수당 지급 ② 인사고과 가점 부여
③ 독립성 보장 ④ 근무조건 개선
⑤ 기타( )

12. 2006년이후 '보세사 보수교육'이 폐지되어, 현재는 필수 재교육의 기회가 없는 실정인데, 현재의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만으로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제고가 충분하다고 보는가?
※ 현행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자율이수제로서 최근 30%정도의 낮은 이수율에 그치는 실정임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불충분 ⑤ 매우 불충분

Collection @ kmou

≪ ④, ⑤ 응답자≫

12-1. 현재의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만으로 보세사의 전문성 유지·제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예전처럼 직무능력 향상교육의 의무화(필수 교육)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13. 현재 보세사 자격요건이 2014년도부터는 일반전형에서 보세화물 취급경력을 삭제하여, 보세사 시험전형에만 합격하면 보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자격요건 완화 추세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현행 보세사 자격요건 : '5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시험 전형에 합격한 자'

① 매우 적합 ② 적합 ③ 보통 ④ 부적합 ⑤ 매우 부적합

14. 보세사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보세사가 다수 배출되어 '양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O, X로 대답≫

14-1. 보세사의 독립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 )

14-2. 보세사의 전문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 )

14-3. 보세사의 지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 )

15. 마지막으로 보세사제도와 관련하여 남겨주실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Collection @ kmou

感謝의 글

어느덧 석사과정을 마무리하며,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순간부터 매학기 수업이 진행될수록 졸업논문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들었지만 끝까지 격려로 이끌어주신 신한원 지도교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의와 연구로 바쁘신 가운데, 논문의 심사위원을 기꺼이 맡아 아낌없는 지도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안기명 교수님과 신영란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매 학기 마다 큰 열정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해주신 국제관세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와중에도 후배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신 관세청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현업으로 바쁘시지만 따로 시간을 내주시어 인터뷰와 설문에 응해주신 보세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사과정 중에 결혼과 출산도 하고 워킹맘으로서 학업과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논문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늘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언니, 동생, 특히 논문준비로 매번 저를 대신하여 육아를 전담해 주신 우리 엄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며느리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시부모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누구보다 빈자리가 컸을 우리 아들, 서율 군과 논문준비로 태교도 제대로 못해준 뱃속에 있는 우리 딸에게도 미안함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도 새벽마다 출퇴근을 하면서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하고 든든하게 지원해준 나의 남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Collection @ kmou